대송단지 간척지 활용과 상생발전을 위한 안산시-한국농어촌공사 업무협약 동의안

의안 번호	9-868

제출년월일 : 2025. 10.13.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☐ 제안이유

○ 대부도 대송단지를 중심으로 농업·관광·에너지 등 복합 기능을 갖춘 미래형 농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 정체된 간척지 개발에 활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, 이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와 협력해 공동용역을 추진하고 중앙부처 협의를 병행할 필요 있음. 특히 본 용역은 안산시가 전액 예산을 부담해 과업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, 농어촌공사가 기술적 검토와 행정 지원을 담당하는 상호 보완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 필요

☐ 법적근거

○「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」제6조

☐ 주요내용

○ 대송단지 간척지 농업·관광·에너지 복합 활용 기본구상 공동용역 추진

○ 안산시 참여방안 마련 및 단계별 실행계획 수립·추진

○ 안산시 총괄기관으로 계약 및 예산 부담, 사업 전반 관리 추진

○ 농어촌공사 기술 검토 및 중앙부처 협의 등 행정 지원 강화

○ 실무협의체 구성·운영을 통한 협력사항 점검 및 과업 이행 관리

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: 【붙임 1】

☐ 협약서(안) : 【붙임 2】

☐ 방침결정문 : 【붙임 3】

☐ 협약(동의) 안건 점검표 : 【붙임 4】

【붙임 1】

대송단지 간척지 활용과 상생발전을 위한 안산시-한국농어촌공사 업무협약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(제3조제2항)

1. 비용발생요인

○ 본 협약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와 공동으로 「대송단지 간척지활용사업 기본구상 수립 공동용역」을 추진함에 따라 총 2억원의 용역비 소요예정 (2026년도 본예산 반영)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 「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1호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○ 본 건의 경우 용역비 총액 2억원은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에 해당하므로, 「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대상

4. 작성자: 기획경제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

【붙임 2】

업 무 협 약 서(안)

대송단지 간척지 활용과 상생발전을 위한 안산시-한국농어촌공사 업무협약

안산시와 한국농어촌공사(이하 “농어촌공사”)는 대부도 대송단지를 중심으로 농업·관광·에너지 등 복합 기능을 갖춘 미래형 농산업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정체된 대송단지 개발에 활력을 불어넣고,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대송단지 간척지 활용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한 협력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력사항) 양 기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.

1. 대송단지 간척지의 농업·관광·에너지 복합 활용을 위한 기본구상 공동용역(이하 “공동용역”) 추진
2. 대송단지 개발을 위한 안산시 참여방안 마련 및 단계별 실행계획 추진

제3조(역할분담)

1. 안산시는 공동용역의 총괄감독기관으로서 과업 전반을 감독하고, 공동용역의 계약을 담당하며 용역비를 전액 부담한다.
2. 농어촌공사는 공동감독기관으로서 계획 수립·검토 등 기술적 지원과 관계 중앙부처 협의 등 행정적 지원을 담당한다.
3.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필요사항은 제5조의 협의체에서 정한다.

제4조(신의성실 원칙) 양 기관은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협력사항을 이행한다. 건설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추진한다.

제5조(실무협의체 운영)

1. 협력사항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하여 협약기관이 정하는 자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한다.
2. 실무협의체는 협력사항 이행 및 역할 수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·논의하며, 필요 시 관계 기관 및 관련 부서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고 협력할 수 있다.

제6조(비밀유지) 양 기관은 협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할 수 없고, 해당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할 수 없다. 다만, 양 기관의 일방이 미리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7조(협약서의 효력) 이 협약은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, 상호 합의에 따른 해지가 없는 한 그 효력은 지속된다.

이 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, 협약기관이 모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5년 11월 00일

안 산 시
시 장 이 민 근

한국농어촌공사
사 장 김 인 중